|  |  |
| --- | --- |
| **근로계약서** | |
| 주식회사 에이치닷(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
|  | **제 1 조 [ 근로계약기간 ]**   1. 본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부터 까지로 한다. |
| **제 2 조 [ 근무부서 및 직무 ]**   1. 갑은 을을 아래 각호와 같이 근무하게 한다.   가. 근무부서 :  나. 담당업무 : 의 소속업무   1. 갑은 필요 시 을의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전항 이외의 업무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다. |
| **제 3 조 [ 취업장소 ]**   1. 을의 취업장소는 갑의 본점 소재지로 한다. 2. 갑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을의 취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 **제 4 조 [ 근무일 및 근로시간 ]**   1. 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 된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3.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4항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휴게시간은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30부터 13:3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 5 조 [ 휴일 ]**   1. 갑은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한다. 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한다. |
| **제 6 조 [ 연차유급휴가 ]**   1. 갑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7 조 [ 연봉 ]**   1. 갑은 을에게 연봉 총액 원을 지급한다. 2. 을의 연봉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 | | | |
|  | 항목 |  | 금액 |  | 비고 |
| 월 기본급 |  | 원 |  | 1일 8시간, 주 48시간, 월 209시간 / 매월 |
| 월 연장근로수당 |  | 원 |  | 월 시간 \* 150%(주 시간) / 매월 |
| 월 급여 총액 |  | 원 |  | - |
| 연간 총액 |  | 원 |  | - |
|  | | | | | |
| **제 8 조 [ 연봉계약기간 및 조정 ]**   1. 전조의 연봉은 부터 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한다. | | | | | |
| **제 9 조 [ 복리후생비 ]**   1. 갑은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 | |
| **제 10 조 [ 임금 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   1. 제 7조 제 2항 소정 월 급여 총액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이하 “급여일”)에 지급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되, 급여일 이후 결근의 경우 익월 급여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2. 을의 근무기간이 정해진 산정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갑은 본 조의 임금 등을 을이 지정한 을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11 조 [ 퇴직금 ]**   1. 을이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갑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한다. 2. 기타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갑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 | | | | | |
| **제 12 조 [ 사회보험 ]**   1. 갑은 을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전항의 연금 및 보험과 관련된 을의 부담금은 매월 을의 월 급여 총액에서 공제한다. | | | | | |
| **제 13 조 [ 제세공과 ]**   1. 을은 임금을 포함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14 조 [ 준수의무 ]**   1. 을은 갑의 피고용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갑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최선을 다하여 갑의 업무지시에 응하며 본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의 사전동의나 요구가 없는 한 여하한 다른 업무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어떠한 영업행위나 거래도 할 수 없다. 4. 을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본 계약에 규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떠한 정보라도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 | |
| **제 15 조 [ 손해배상 ]**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갑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제 16 조 [ 평가 ]**   1. 갑은 본 계약기간동안 을의 업무태도와 회사의 경영가치 공감도, 성과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전 항의 평가내용은 을에 대한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채용 심의에 활용될 수 있다. | | | |
| **제 17 조 [ 정보제공 ]**   1. 계약 종료 후 을이 이직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을의 근무평정(업무능력, 성실성, 책임감, 협력성 등)결과를 요청 시 갑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 |
| **제 18 조 [ 보칙 ]**   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기타 갑의 내부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조 1항의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기타 갑의 내부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본 계약에 준용한다. | | | |
| **“갑”** | | | |
|  | **주식회사 에이치닷**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이사** | **:** | **(인)** |
| **“을”** | | | |
|  | **주소**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성명** | **:** |  |